

美 육류업계, 대 한국 301조 제조 철회

지난 11월 16일 KOTRA 워싱턴 무역관이 USTR(美 무역대표부) 및 美 육류업계를 접촉한 결과 지난 9월 30일 한국의 육류 수입장벽에 대한 301조 제조는 철회된 것으로 밝혀졌다.

美 육류업계는 철회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자유무역 분위기를 저해하고 APEC회담 등에서의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킨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부측과 협의한 결과인 것으로 전해졌다.

USTR은 제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결정시한인 11월 14

일이 지나도 계속 공식발표를 지연시키면서 제조자측인 美 육류업계와 협의를 계속해 철회를 유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USTR측은 잠정적으로 철회된 것이며, 한국측과의 관련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다시 제조될 수 있다고 밝혔으나, 301조에 대한 구체적 비판 여론은 물론, 자체판단으로도 301조는 미국의 이미지 손상만 초래하고 실질적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비등하고 있어 추가 제조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KOTRA 해외시장)

미국 무역대표부 조사(한국관련 무역장벽 제기내용)

업체 또는 기관	문제제기 분야	주요 내용
Wine Institu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 - 관세 - 내국세 - 비관세장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관세 - 주류 평균관세 30% - 과일 포도주 평균 관세 15% ◦ 내국세 - CIF가격에 관세를 포함시켜 과세액 평가 - 주세, 부가가치세 및 교육세 ◦ 비관세 - 수입제한(허가세, 수입 및 분배제한) - 보조금(농림수산부의 보조금 지급) - 라벨링(상품명, 원산지, 수입자명, 허가번호, 알코올 함량, 구성비율, 불량품 교환주소, 저장요령 등에 관한 한국어 표기요건)
Campbell Soup Compan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조림 스프 및 야채주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 30%
Distilled Spirits Council United States(DISC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 - 관세 - 비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 30%(UR결과에도 관세인하 미흡) ◦ 비관세 - 차별적 주세 및 교육세

업체 또는 기관	문제제기 분야	주요 내용
California Cling Peach Advisory Boa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숭아 통조림 - 고율관세 - 통관절차 - 원산지 라벨링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율관세 - 복숭아 통조림: 50% - 과일 카테일: 50% ◦ 식품안전 검사를 이유로 한 통관지연 ◦ 원산지 라벨링 규정의 잦은 변경으로 혼란 야기
Nat'l Potato Counc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동감자 - 원산지 라벨링 표시 - 검사 및 검역 기준 - 일부제품 수입금지 - 검역기간 - 그린카드제도 - 고율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잡한 원산지 라벨규정 ◦ 비과학적인 검사기준 채택 ◦ Potato, Flour, Meal, Pellets and Flakes제품 수입금지 ◦ 검역기간 장기화(25일) ◦ 그린카드제도로 수입농산물을 간접적으로 수입규제 ◦ 고율관세 - 냉동감자: 30% - 생감자: 30% - 기타 가공제품: 20%
Weich Food In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도주스 - 고율관세 - 원산지라벨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율관세 부과 - 포도주스: 50% - 포도잼: 30% ◦ 원산지 규정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혼란 야기
Blue Diamond Grow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몬드 - 수입라이선스 - 통관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라이선스 발급시 Proforma invoice요구 ◦ 통관지연(3주)
California Cherry Advisory Boa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erry - 고관세 - 원산지 라벨 표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관지연으로 인한 제품 신선도 저하(2~4일) ◦ 고율관세 부과 - 신선 체리:50% - 일본의 경우:10%